2020년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0. 4. 13.(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4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78건(안건번호 제2020-8139호~938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8139호, 8140호는 민원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저작권자인 중국 회사가 이용자 인증 과정에서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당사자 간의 사적 분쟁 해결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8141호, 8142호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별도의 합법 시장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8143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외 저작권침해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심의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0-8144호~8147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8148호~8151호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정 블로거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8152호는 네이버 카페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사안임. 토렌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제공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고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해주는 토렌트 파일의 제공은 저작권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8153호~815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88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223건(안건번호 제2020-1376호~1598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7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21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1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4개 안건, 동일 게시물에 관해 중복으로 청구한 8개 안건(21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4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이번 회의록부터는 지난 회의에서 ○○○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식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취소선 표시를 미리 해놓았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게시물 제목, 저작물명, 7쪽의 민원 신고 내용, 저작물명, 8쪽의 저작물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1쪽~22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의 취소선 부분은 민원 내용과 관련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동의함. 제2호 안건 회의록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이 마땅해 보임.

- C 위원: 같은 생각임.

- D 위원: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 제목, 저작물명, 민원 신고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1쪽~22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8139호~9383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978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139호,

8140호는 민원인 회사가 신고한 건임. 해당 사안은 특허청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음. 민원인 회사는 중국 제조사가 제조한 반려동물 자동급식기의 국내 독점 수입, 판매권자라고 주장함.

(민원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민원인 회사는 “●●●”, “◎◎”, “◇◇◇◇◇◇◇◇◇◇◇◇◇◇◇◇◇◇◇◇◇◇◇◇◇◇◇◇◇◇◇◇◇◇”, “◆◆◆◆◆◆◆◆◆◆◆◆◆◆◆◆◆◆◆◆◆◆”, “□□□”라는 내용으로 신고함.

(안건번호 제2020-8139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8139호는 온라인쇼핑몰 내 판매자가 “■■■■■■■■■■■■■■■■■■■■■■■■”라는 제목으로 제품 정보와 함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 주소를 제공한 사안임. 해당 URL은 링크가 아닌 주소 정보임.

안건번호 제2020-8140호는 안건번호 제2020-8139호에서 제공하는 URL 주소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임. 블로그 이용자가 2019. 11. 7. “△△△△△△△△△△△△△△△△△△△△△△△△△△△”이라는 제목으로 ▲▲을 제공한 사안임.

민원인 회사는 ▽▽▽▽▽▽▽▽▽▽▽▽▽▽▽▽▽▽▽▽▽▽▽▽▽

▽▽▽▽▽▽▽▽▽▽▽▽▽▽▽▽▽▽고 주장함. 참고로 전문위원이 2020. 4. 9. 민원인 회사의 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민원인 회사는 우리말 번역을 하여 중국 제조사에 전달하였고, 중국 제조사가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하였다고 함.

보호원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를 확인했으나 정상작동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작동되며,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중국 제조사가 인증을 함. 이는 시리얼 번호가 아니며 중국 제조사는 국내 독점 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과 병행수입 또는 중국 내 구입 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이용 인증을 해주고 있다고 함. 한글 번역이 추가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민원인 회사가 인증 절차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함.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를 구매하지 아니한 자도 인증을 받는 데 제한이 없다고 함.

민원인 회사는 중국 제조사와 체결한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reement, 확인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저작권에 관한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음.

(민원인 회사가 보호원에 제출한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reement'를 제시하면서)해당 지적재산권 보호프로그램 계약서에는 "☆☆"하고, "★★★"한다는 내용이 있음. 해당 지적재산권 보호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유형물인 제품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은 없음.

(민원인 회사가 보호원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여주면서)중국 제조사가 작성한 문서로 보임. 해당 확인서에는 "◁◁◁◁◁◁◁◁◁◁◁

◁◁◁”라 밝히고 있음. 역시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판매권을 확인해주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은 없음.

(민원인이 보호원에 제출한 ‘이메일 1’을 보여주면서)민원인은 해당 이메일에서 “◀◀◀◀◀◀◀◀◀◀◀◀◀◀◀◀◀◀◀”, “▷▷▷▷▷▷▷▷▷▷▷▷▷▷▷▷▷▷▷▷▷▷▷▷▷▷▷▷▷▷▷▷▷▷▷▷▷▷▷”, “▶▶”, “♤♤♤♤♤♤♤♤♤♤♤♤♤♤♤♤♤♤♤♤♤♤♤♤♤♤♤♤♤♤♤♤♤”, “♠♠♠♠♠♠♠♠♠♠♠♠♠♠♠♠♠♠♠♠♠♠♠♠”, “♡♡♡♡♡♡♡♡♡♡♡♡♡♡♡♡♡♡♡♡♡♡♡♡♡♡♡♡♡♡♡♡♡”, “♥♥♥♥♥♥♥♥♥♥♥♥♥♥♥♥♥♥♥♥♥♥♥♥♥”라 요청함.

(청구인이 보호원에 제출한 ‘이메일 2’를 보여주면서)해당 이메일은 민원인이 한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저작권에 관해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음. 해당 자료는 민원인의 회사와 중국 제조사의 이메일 수발신 내용임. “♧♧♧♧♧♧♧♧♧♧♧♧♧♧♧♧♧♧♧♧♧♧♧♧♧♧”, "♣♣", “◉◉◉”, “◈◈◈”라는 내용이 있음.

해당 어플은 민원인 회사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무료로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함. 전송한 다음 다운로드 하여 실제로 이용하려면 제조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제조사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증

해주고 있다고 함.

한글 번역이 추가된 어플리케이션이 민원인 회사와 중국 제조사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거나, 민원인 회사가 저작재산권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함.

안건번호 제2020-8139호의 경우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병행수입 제품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큼.

(안건번호 제2020-8140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8140호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할된 압축 파일을 이용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은 한글 번역이 추가된 어플리케이션인지 확인되지 아니함.

- C 위원: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 1’에 보면, “▤▤▤▤▤▤▤▤▤▤▤▤▤▤▤▤▤▤▤▤▤▤▤▤▤▤▤▤▤▤▤▤▤▤”라는 내용이 있음. 해당 링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이메일에서 제출한 “▥▥▥▥▥▥▥▥▥▥▥▥▥▥▥”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이 민원인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링크가 블로그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함. 민원인 회사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답함.

- C 위원: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용자는 해당 URL 주소에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음.

- B 위원: '▼▼▼▼▼▼▼▼▼▼'를 구입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제품을 구동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주체는 중국 제조사임. 중국 제조사는 제품 구매 여부, 구매 경로와 관계없이 어플리케이션 이용 인증을 해주고 있음.

- C 위원: 어플리케이션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보호원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또한 그것에 대한 명백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사인 간 분쟁에 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어플리케이션 인증을 해주는 중국 제조사가 저작권자에 더 가까워 보여 민원인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임.

- C 위원: 병행수입 제품과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 이미지를 도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인 간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해당 사안도 이에 준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D 위원: 민원인의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소개하는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온라인쇼핑몰의 업체가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어플리케이션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임.

- D 위원: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용법에 대해 소개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굳이 시정권고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 A 위원: 민원인의 회사가 독점판매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병행수입 부분이 문제인 것으로 보임. 병행수입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막을 수 없음.

- C 위원: 민원인의 회사는 한글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저작권자에 해당하니 한글판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임. 보호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원인의 회사가 공동저작권자라고 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보호원이 해당 부분을 조사할 권한도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8139호, 814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어플리케이션의 링크 및 다운로드가 특별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해당 사안은 사인 간의 권리 분쟁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기관이 개입하기에 적절치 않고,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8139호, 8140호의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며, 당사자 사이의 사적 분쟁 해결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해 보임.

- B 위원: 민원인이 공동저작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중국 제조사가 제한 없이 어플리케이션 인증을 해주는 점, 국내 독점 판매권자와 병행수입자간의 사적 분쟁 해결 절차로 처리함이 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139호, 8140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141호, 814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 2인이 민원인의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치과홍보 게시물을 복제·전송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함.
(안건번호 제2020-8141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의거하여 게시중단(복제전송의 중단)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8141호, 814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해당 사안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이미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이 마땅해 보임.

- A 위원: 해당 사안은 사적 분쟁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재 전송 중단

된 게시물이므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임.

- C 위원: 또한 안건번호 제2020-8141호, 8142호의 경우 별도의 합법시장을 상정하기 어려워 보임.

- B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141호, 8142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14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사이트 운영자가 2019. 7. 10. "▧▧▧▧▧▧▧▧▧▧▧▧▧▧"라는 제목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 3개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함.
  (안건번호 제2020-8143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라는 내용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광고도 게재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통해 '¤¤¤' 대체사이트인 '¶¶¶', 애니메이션 모음 사이트인 '♬♬♬♬'로 연결됨. '¤¤¤'는 현재 연결이 되지 아니함. 이용자들은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 '♬♬♬♬'의 존재사

실, 사이트 주소 등의 정보를 알게 됨.

('¤¤¤ 주소 대체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서)'¶¶¶' 사이트에는 "♭♭♭♭♭♭♭♭♭♭♭♭♭♭♭♭♭♭"라는 내용이 있음. 해당 사이트에는 사행성 광고가 굉장히 많음.

(해당 사이트에서 '♮♮♮♮♮♮♮♮♮♮' 9화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는 우리나라 웹툰으로 보임. 원작 저자가 '#######'임.

- A 위원: 해당 게시물에 'copyright' 표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화면을 확대한 화면을 제시하면서)'copyright'가 아님. 해당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넣어 둔 것임.

  저작권침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 내 저작권침해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 정보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대법원은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링크 글을 게시한 자의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방조책임을 부정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링크행위에 대한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음.

  다만 안건번호 제2020-8143호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방조책임이 인정된 판례 사안과 차이가 있음.

  '▨▨▨' 사이트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하더라도 게시글

작성 권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댓글이 없음. 사이트 운영자 외에는 다른 게시자가 없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음.

저작권법상의 시정권고 제도 입법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파일 공유 등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를 상대로 일정한 조치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행정조치가 도입된 것으로 보임.

저작권법 제133조의2와 제133조의3의 법 문언에서 보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복제·전송자’를 구분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계정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비교법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규정하는 미국에서도 학계나 법원은 자신의 임원이나 고용인에 의하여 저작물을 저장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 의한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국한된다고 할 것임.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이용자’가 저작물 등을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니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사안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경우와 비교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할 수 있는 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33조의3 해석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의 지위를 겸

하고 있는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도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임.

아래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관해 '2018년도 제4회 전체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와 2018년도 심의위원의 연구보고서를 첨부해두었음.

- C 위원: '2018년도 제4회 전체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당 전체위원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소수 입장이 기록되어 있음.
  전체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재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만약 제2기 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꾸고자 한다면 해당 사안에 관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 B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음.

- C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는데 자신이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하고 자신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음.

- C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민원이 꾸

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외부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사안에 대해 2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2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안건이 제1분과위원회로 처음 올라온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2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 상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직접 게시 안건들은 모두 다른 이슈가 있어 부결되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814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해당 사안은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지의 법리상 문제가 있어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함.

- A 위원: 해당 안건은 시정권고를 보류하고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자는 의견임.

- C 위원: 동의함.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B 위원: 저는 안건번호 제2020-8143호는 시정권고에 대한 한계가 있는 사안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 규제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규제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해당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1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보류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심의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144호~814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림. 링크 게시물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바 있음.
(안건번호 제2020-8144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의 간단한 줄거리와 함께 직접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그 외 심의대상 게시물은 각각 일본 애니메이션 '☸☸☸☸☸☸☸☸☸☸☸', '☼☼☼☼☼☼☼☼☼☼☼☼', '☽☽☽☽☽☽☽☽☽☽☽☽☽☽☽☽☽☽☽☽'의 간단한 줄거리와 함께 해당 영상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작성자와 링크로 연결되는 영상물의 업로더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8144호~814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같은 생각임.

- A 위원: 불법복제물을 공중에 전송하고 있음.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144호~814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148호~8151호는 2020. 3. 23., 2020. 3. 31., 2020. 4. 1.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총 85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를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는 2017. 10. 1.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8148호~815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불법복제물을 공중에 전송하고 있음.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148호~815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15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카페 이용자가 2020. 3. 24. “♔♔♔♔♔♔♔♔♔♔♔♔♔♔♔♔♔♔♔♔♔♔♔♔♔♔♔♔♔♔♔♔♔♔♔♔♔♔”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중국드라마의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게시함. 해당 중국드라마는 총 30부작으로 ‘♕♕♕♕♕♕♕♕♕’에서 2011. 8.경 방영하였음.
  (민원 신고 내용을 보여주면서)민원인은 “♖♖♖♖♖♖♖♖”, “♗♗♗♗♗♗♗♗”, “♘♘♘♘♘♘♘♘♘♘♘♘♘♘♘♘♘♘♘♘♘♘♘♘♘♘♘♘♘♘♘♘♘♘♘♘♘”, “♙♙♙♙♙♙♙♙♙♙♙♙♙♙♙♙♙♙♙♙♙♙♙♙”는 내용으로 신고함.
  (안건번호 제2020-8152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은 해당 토렌트 파일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재생해보았음. 중국어 자막이 담겨 있음.
  토렌트 마그넷 주소나 토렌트 파일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함으로써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됨.
  토렌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제공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고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해 주는 토렌트 마그넷 주소 또는 토렌트 파일의 제공은 저작권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편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은 베른협약 및 WIPO 저작권 조약, TRIPs 협정 등의 체약 당사국이므로 심의 안건의 저작물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

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

- D 위원: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카페 가입 조건이 까다롭거나 카페가 소규모로 운영될 경우에는 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해당 카페 회원 수는 93,775명이어서 사적인 모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게시물을 볼 수 있는 회원 등급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 C 위원: 동의함. 소규모로 운영되는 카페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 A 위원: 소규모 카페까지도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범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815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불법복제물을 공중에 전송하고 있음.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같은 의견임.
  다만, 비공개 성격의 소모임인 경우 해당 카페 등의 가입자 수, 가입 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적 이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15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153호~8155호는 실명의 민원인 1명과 익명의 민원인 1명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에서 만화 ‘♚♚♚♚♚♚♚♚’, ‘♛♛♛♛♛♛♛♛’ 복제물을 판매함. 웹하드에서 만화를 캡처한 jpg.파일 형태로 판매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8153호~815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음.

- D 위원: 해당 만화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임.

- A 위원: 불법복제물을 공중에 전송하고 있음.

- C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153호~815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156호~9383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551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3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10.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657호는 2019. 1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10.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5,000원에 대여, 9,9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화의 원작은 ‘신비아파트’임.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 3. 8. 기준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역대 한국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하였음.

(영화 ‘스파이 지니어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715호는 2020. 1. 22.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3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10,9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상물은 더빙 버전임.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임.

(영화 ‘용길이네 곱창집’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777호는 2020. 3. 12.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24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10.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3.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최근 해당 영화의 불법복제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

(방송 ‘메모리스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934호는 웹하드에서 ‘메모리스트 5화’를 33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tvN 채널에서 2020. 3. 11.부터 수요일, 목요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영 중인 드라마임. 해당 드라마의 원작은 만화임. 해당 드

라마는 타인의 기억을 스캔하는 초능력 형사에 대한 내용임.
(방송 '킹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943호는 웹하드에서 '킹덤 시즌1, 2'를 91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넷플릭스'에서 '킹덤 시즌1'은 2019. 1. 25., '킹덤 시즌2'은 2020. 3. 13.에 각각 공개되었음. 해당 방송물의 원작은 만화임.
(게임 '오리와 도깨비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382호는 2020. 3. 11.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24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29,900원이고, 배급사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임.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383호는 2020. 3. 26. 출시된 '시티즈: 스카이라인 노을항'을 웹하드에서 3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15,500원이고, 배급사는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8156호~938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불법복제물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C 위원: 해당 안건들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D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해야 할 것임.

- B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156호~9383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139호~8142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0-8143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밖에 안건번호 제2020-8144호~938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25면부터 37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76호~1598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7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나머지 21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1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4개 안건, 동일 게시물에 관해 중복으로 청구한 8개 안건(21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2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